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규약

개정 : 2014.12.16.

전 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편법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선구적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겸허하게 계승하여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굳게 단결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로자로서 대구대학교의 발전과 재직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조합은 대구대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아울러 대구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생활향상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교육 및 조직정비 강화에 관한 사항
4. 대학 경영 합리화 추진 및 촉구에 관한 사항
5. 대학 자율권 확보에 관한 사항
6. 대학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추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소재지)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 5조(가맹) 본 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6조(구성) 본 조합은 대구대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

1. 3급 이상
2. 차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소장
3. 대학자체직
4. 계약직
5. 일용직
6. 족탁직
7. 기타 조합대의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의결된 자.

제 7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이 정한바 조합원 제외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반

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8조(자문위원회) 본 조합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비의결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 부서의 결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과 대학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기타 협정을 준수할 의무
3.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서 의결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5. 매월 봉급의 0.7퍼센트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하며, 매월 20,000원의 목적적립금을 납부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및목적적립금) ①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한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목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적적립금은 조합원 자격상실 전까지 납부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원금을 환불한다.

제11조의1(노동조합 후생복지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종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세부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 4 장 기 구

제12조(기구)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8월중에 실시한다.
3. 임시총회는 위원장의 요청 및 부서장의 의결로 소집한다.
4.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5. 전호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호선한 자가 소집을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 및 사업 탄핵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조합임원 및 대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소집공고) ①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 일로부터 3일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와 의결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한다.

②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공고한다.

③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0인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의장선출은 대의원 2/3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이 호선한다.

②총무는 의장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의장은 대의원회를 총괄하며,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제19조(소집) 대의원회의 소집은 의장과 집행위원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이를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총회 소집요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총회에서의 수임사항 집행
4. 조합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대한 심의
5.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8. 예·결산에 대한 심의
9. 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10. 단체협약(안) 심의
11. 노사협의회, 소속단체 파견 대의원, 선거인 및 교내 각종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의 추천 심의
12.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심의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집행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일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안)에 관한 사항
4.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총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6. 조합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규약 및 규정의 해석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24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행한다.
 -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 (2) 대의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각종 감사결과를 대의원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6.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회계감사규정을 둘 수 있다.

제 5 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2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 의

제27조(성립 및 의결)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의 성립
4. 제11조 제1항의 목적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제29조(회의 진행) ①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위원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제33조(1)항 5호에 의한다.

②조합의 각종 회의결과는 총무 또는 간사가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원

제30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3명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임원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회계감사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의한다.
- ③ 그 밖의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 임기 시작일은 8월 1일, 임기종료일은 7월 31일로 한다.

- ② 중임 할 수 있으며 회수에 제한받지 않는다.
- ③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임무와 권한)

① 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조합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부서의 부서장을 임, 면한다.
5.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부위원장
 - (2) 사무국장
 -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

② 부위원장

위원장의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삭제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제 7 장 사무국

제34조(부서) 조합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사통계부
3. 홍보부
4. 복지부
5. 법규부
6. 쟁의·교육부
7. 여성부
8. 기획부

제35조(임무) 사무국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지출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3. 홍보부 : 조합 활동에 관한 대내외 교육, 홍보, 조직, 계통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복지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법규부 : 조합에 관한 법규 해설 및 자료정리에 관한 사항
6. 쟁의·교육부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과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7.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제반사항
8. 기획부 : 조합 활동에 관한 기획 및 대외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제 8 장 재 정

제36조(재원) 본 조합의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7조(특별기금)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기금을 둘 수 있다.

제38조(예산확정) 본 조합의 예산은 총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단체교섭, 쟁의 및 노사협의회

제 1절 단체교섭

제40조(단체교섭의 권한) 본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장이 된다.

제41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10명으로 구성한다.

제42조(단체협약안 심의)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체결)안은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 2 절 쟁 의

제43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찰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4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 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장이 선언 할 수 있다.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언 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언 할 수 있다.

제46조(쟁의행위) 쟁의 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이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48조(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대책 수립
2. 대의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 3 절 노사협의회

제49조(노사협의회)

- ①본 조합과 대학간에 설치하고 노사협의회에 파견할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대표위원은 위원장이 된다.
- ②노사협의회의 대표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노사협의회 규정의 해석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위원장 또는 대의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 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있다. 단,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 1. 조합의 규약을 위반했을 때
-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1)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 (2)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 (3)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 조직상의 물의를 빚게 한 자. 단,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권한정지에 처한다.
- 2. 권한정지
- 3. 제명
 - (1) 본 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위반 되는 행동을 한 자.
 - (2) 본 조합의 지시 또는 결의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 (3)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한 자.
 - (4) 본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하거나 또는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 (5)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또는 폭력으로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제53조(징계위원회) 본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서 5-7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4조(재심) ①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며 재심청구는 권한정지, 제명에 한한다.

제55조(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①임원 및 대의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 할 수 있다.
②탄핵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후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 11 장 해 산

제56조(해산사유) ①본 조합의 조직계획에 의하여 분할 및 병합을 필요로 할 때.

②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의 3분의 2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57조(청산) ①본 조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는 해산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임명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4. 9.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이 규약 시행 전 4급 이상 직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 시행 전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1996. 9.24일(정기총회의결)자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4. 목적적립금의 한도액은 300,000,000원으로 하고, 조합원의 퇴직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시 개인 부담원금은 전별금으로 환불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8. 03.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목적적립금은 조합원 개인당 75개월을 일률적으로 납입하며, 조합원의 퇴직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시 개인 부담원금은 전별금으로 환불한다.
3. 제32조(임원의 임기)의 개정에 의한 해석 적용은 제11대 노동조합 임원은 제외된다.
4.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황금 2돈 3돈 5돈 7돈	4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 한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황금 10돈	행운의 열쇠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

부칙

1. 이 규약은 2009. 02. 1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제32조(임원의 임기)의 개정에 의한 해석 적용에 있어 제11대 노동조합의 임기 종료일은 2009년 07월 31일이 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10. 09. 1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목적적립금(특별기금)은 조합원 자격상실 때까지 납부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원금을 환불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2011. 09.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 · 처부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4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 한다.
	정년퇴직,명예퇴직	1,500,000원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

부칙

1. 이 규약은 2012. 04. 1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 목적적립금(특별기금)은 조합원 자격상실 전까지 납부하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원금을 환불한다.

3.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금 액	비 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 · 처부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15년이상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3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 한다. 단, 2012.04.10일자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4급 직원에게는 전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정년퇴직,명예퇴직	1,500,000원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

4. (경과조치) 이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4급 직원은 2012년 4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3. 9.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4.12.1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표-1] 노동조합 후생복지비 지급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금 액	비 고
축의금	본인결혼	100,000원	1회
	자녀결혼	100,000원	
조의금	본인	5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부모(시,처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100,000원	조기 + 조화(3단) 1식
전별금	3년이상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15년이상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3급 승진자와 조기 퇴직자는 중도 퇴직자에 준 한다. 단, 2012.04.10일자 개정 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4급 직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1,500,000원	
위로금	본인	70,000원	병가 5일 이상 1개월 미만
		70,000원	여조합원 자녀출산 축하
		300,000원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입원 치료 한 경우